

8. 위탁기관지정

건설교통부고시제1999-259호 1999. 8. 21.

1.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의 협력관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와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건설협회 · 대한건설협회 · 국토연구원(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난방시공협회, 건설공제조합, 대한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공사공제조합과 공동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청은 원칙적으로 협회 및 공제조합이 수행

2. 위탁한 업무의 처리방법

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대상 건설업자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의 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청중 건설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청은 각 협회

또는 공제조합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토연구원이 건설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직접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3. 시행시기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회보